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67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박균택 · 이건태 · 양부남
정준호 · 황명선 · 박홍배
김주영 · 이성윤 · 정진욱
전진숙 · 정일영 · 박 정
안도걸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3(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형집행정지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9(형집행정지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검사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인 사람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지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의10(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검사는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형집행정지통지서를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의9에 따른 형집행정지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중병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보호관찰관의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정지자는 현장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에 따른 형집행정지자의 형집행정지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1(형집행정지 조건 위반 상황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집행정지자가 제31조의9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거나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형집행정지자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집행정지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와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집행정지 조건을 변경하거

나 형집행정지를 연장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2(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9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을 때
2.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때
3. 형집행정지기간이 종료된 때
4. 형집행정지 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때

제31조의13(형집행정지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형집행정지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수신자료를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형집행정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2. 전자장치 부착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7항 및 제1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벌칙) ①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집행정지자가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집행정지 등과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형집행정지자의 수신자료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 형집행정지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장의3 형집행정지 등과 전자</u> <u>장치 부착</u>
<u><신 설></u>	<u>제31조의9(형집행정지 등과 전자</u> <u>장치 부착) ①</u> <u>검사는 징역, 금</u> <u>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u> <u>사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u> <u>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라 형</u> <u>의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경우</u> <u>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u> <u>있다.</u> <u>②</u> <u>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u> <u>92조에 따라 노역장유치의 집</u> <u>행 중인 사람 및 「치료감호</u> <u>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u> <u>라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사람</u> <u>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u> <u>지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u> <u>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u> <u>수 있다.</u>
<u><신 설></u>	<u>제31조의10(전자장치 부착의 집</u> <u>행) ①</u> <u>검사는 제31조의9에 따</u> <u>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u> <u>는 경우 지체 없이 형집행정지</u>

통지서를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의9에 따른 형집행정지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중병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보호관찰관의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정지자는 현장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에 따른 형집행정지자의 형집행정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신 설>

야 한다.

⑤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1(형집행정지 조건 위반 상황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집행정지자가 제31조의9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거나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형집행정지자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집행정지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와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집행정지 조건을 변경하거나 형집행정지를 연장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2(전자장치 부착의 종
료) 제31조의9에 따른 전자장
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사면
이 있을 때
2.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때
3. 형집행정지기간이 종료된 때
4. 형집행정지 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
게 되는 때

<신 설>

제31조의13(형집행정지자 수신자
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
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
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형집행정지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
야 한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형집행정지
자의 수신자료를 열람·조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신 설>

1. 형집행정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2. 전자장치 부착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7항 및 제1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벌칙) ①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집행정지자가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

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